산재 승인 후에 오는 어려운 일들

김지나 회원, 노무사

#1. 산재 승인 후 전원과 요양 연기의 어려움

올해 2월, 철강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A 씨는 일을 하다가 롤러기에 손가락이 끼었다. 좌측 2, 3, 4 손가락 으깸 손상, 압착손상 및 펄프의 손상, 연부조직 절단, 개방성 골절 등을 진단받았고, 혈관 수술, 이식 수술 등 현재까지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 산재 승인은 받았지만, 사업장과 병원, 공단 사이에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한국어가 좀 더 원활한 재해자의 사촌 누나가 처리를 돕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대리인이 재해자가 처음 내원한 병원에 방문했을 때 회사 이사는 '회사가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며 큰소리로 치료 중인 재해자를 다그치고 있었다. 대리인이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야 '소리 높인 건 미안하다'라며 돌아갔지만, 재해자도 사촌 누나도 회사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다. 사고가 난 직후 회사는 119를 부르지 않았고, 몇 시간이나 걸리는 작은 병원으로 재해자를 데리고 갔다가, 그 병원에서 치료 못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옆 도시의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이다.

3월, 병원 간 전원(의료기관 변경) 처리 문제가 있었다.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입원 중 대학병원으로 하루 내원한 날을 병행 진료 넣었다가 취소하고 전원 신청을 하였는데, 대학병원에서 다시 그 병원으로 돌아갈 때 전원 신청서 접수가 되지 않았다. 전화로 확인한 후 5일이 지난 이후에야 접수됐다. 또 두 병원에서 요양 기간을 달리 기재한 진료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약 2주간 요양 기간 연장이 되지 않았고, 재해자는 그 동안 불안감을 안고 지내야 했다.

4월,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으로 전원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전원 신청 결

정이 나지 않았다.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지 재해자는 불안했다. 대리인이 공단에 확인해 보니, 병원에서는 신청서를 보냈지만 공단에서 빠져 있었다. 다행히 그날 오후 처리되었다.

5월, 병원과 공단의 절차 처리 문제가 반복되자 사촌 누나는 재해자를 가까이에서 돌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재해자와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돌아왔지만, 이번에도 제때 접수되지 않았다. 대학병원 담당자는 실수를 인정하였고, 거의 한 달 만에 전원을 확인하였다.

9월, 서울로 온 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진료 계획서를 낸다고 한다. 제출 전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 확인하니, 수술을 며칠 앞둔 시점의 진료 계획서에 '현 상태에서 원직복귀 가능', '취업 치료 가능'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지금 상태와 재해자의 원래 업무를 설명하고 다시 소견을 요청해 겨우 수정된 진료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재해자는 재해 이후 크고 작은 수술을 여러 번 거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위축돼 있었다. 그런데 치료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산재 절차를 걱정해야 했다.

#2.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지급처분의 어려움

3년 전, 뇌종양으로 산재를 인정받고 치료 중인 B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치료 중 재발하여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진료계획서상 그 시기가 '취업치료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 휴업급여를 부지급 처분받았다.

당시 재해자는 간단한 가위질이나 컴퓨터 키보드를 누르는 일도 어려웠고, 보행이 어려워 자주 넘어지며, 척수 전이 이후에는 앉아 있지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두통 부작용으로 비마약성 진통제를 다량으로 먹고 있었다. 방사선 치료 25회 및 항암치료 3회(1회당 4회)를 병행하는 상태이기도 했다. 당시 재해자에게 가능한 취업은 무엇이었을까.

심사청구 끝에 부지급된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단은 또다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부지급 예정이니 또다시 심사청구를 통해서 받으라'라고 설명하였다. 취소된 처분 당시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또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대리인이 절차 규정 위반과 함께, 공단이 스스로 시정한 처분을 같은 근거로 반복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한 후에야 휴업급여를 제대로 받았다.

올해 5월, B 씨의 병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하반신 마비가 발생했다. 주 치료기관에서는 항암치료는 하지 못하고 있으나, 뇌압 상승 위험, 면역 및 감염 주의, 통증 관리



▲ 2024.6.25.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개혁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

등이 필요하고, 하반신 마비 재활치료도 필요해 입원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하지만 최근 전원한 병원 산재 담당자는 재해자에게 "'공단에서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지'에 관해서 물어왔고, 진료 계획을 올리더라도 공단에서 승인이 안 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입원 기간은 100% 자부담"이라고 설명하였다. 대리인이 산재 담당자를 찾아가 주 치료기관의 소견을 전달하였지만, 진료 계획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4시간 간병비 등 큰 비용이 지출되는 상태에서 재해자는 또다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받을까 봐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그리고 며칠 뒤 뇌압 상승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급하게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했다. 대리인은 당일 의무기록을 공단에 제출했다. B 씨의 입원 치료 진료 계획서는 승인되었을까.

산재보험제도가 가야 할 방향

A 씨가 3개 손가락 으깸 및 골절로 혈관을 살리고 이식하는 동안, B 씨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을 반복하는 동안 재해자는 자신이 치료받아야 할 상태임을 거듭 설명해야 했다.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요양 기간이 끝나지는 않았는지, 취업 치료에 관한 소견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도 재해자의 몫이었다. 산재를 인정받은 뒤에도 치료와 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다.

의료기관과 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책임지고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는 없을까. 치료 종결을 하려면 치료 종결 이유와 예정일을 기재한 통지 절차가 있어야 한다. 진료계획과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치료 경과와 예정된 치료, 통증과 약물의 영향, 일상생활 수행 정도, 실제 담당 업무의 내용과 위험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산재보험의 역할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친 노동자가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고, 치료받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며, 회복 상태에 맞게 일상과 노동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일터